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청소행정과-974  |
| 등록일자 | 2016.1.11. |
| 결재일자 | 2016.1.12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     |

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★주무관 | 지역청결팀장       | 청소행정과장     | 복지문화국장          |  |  |
| 정명기  | 최경희          | 강현섭        | 전결 01/12<br>김효길 |  |  |
| 협조자  | 재무과장<br>지출팀장 | 김병희<br>김애영 |                 |  |  |

## 2016년 구룡마을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



- 기 간 : 2016년 1월 ~ 12월
- 추진 대상 : 개포동 567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(구룡마을)
- 추진 내용
  -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구룡마을 배출 생활쓰레기 무상수거 실시
  - 생활쓰레기 수거 수수료 청소대행업체에 지급
  - 1995.6.10.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거 무상수거
- 수거 업체 : (주)평원기업
- 소요 예산 : 82,296천원

2016. 1.

강 남 구  
(청 소 행 정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| 검토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인 및 적시사항  |
|--|--|
| <b>관련 규정<br/>및 근거</b>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br><br>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2조<br>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  |
| <b>추진 경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br><br>• 추진경위 : 구룡마을 무허가지역 쓰레기 수수료 감면  |
| <b>예산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br><br>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 |
| <b>수혜자<br/>및 범위</b>                        | 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br><br>• 대상 : 구룡마을 주민  |
| <b>분야 별<br/>검토사항</b><br>[계속 : ]<br>[신규 : ] | 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br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<br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<br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<br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<br>⑤ 시장조사 ----- ( )<br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<br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)<br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<br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<br><br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|
| <b>타 기관<br/>사 례</b>                        | 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br><br>• 해당없음   |
| <b>전문가<br/>자 문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br><br>• 해당없음   |

# 2016년 구룡마을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

종량제수수료 감면지역인 구룡마을에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실시하고, 그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자 함

## I 개 요

- 기 간 : 2016년 1월 ~ 12월
- 추진 대상 : 개포동 567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(구룡마을)
- 추진 내용
  -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구룡마을 배출 생활쓰레기 무상수거 실시
  - 생활쓰레기 수거 수수료 청소대행업체에 지급

## II 추진 계획

- 구룡마을 배출 생활쓰레기 무상수거 실시
  - 수거 업체 : (주)평원기업(※1995.6.10.부터 구룡마을 배출쓰레기 수거실시)
  - 수거 방법
    - 구룡마을 거주자는 지정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(종량제봉투 미사용)
    -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지정장소를 순회하며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
-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급
  - 지급 주기 : 매월 지급
  - 지급 금액 : 월 6,858,000원(정액지급)
  - 지급 방법 : 청소대행업체에서 작업실적 등을 첨부하여 청구

## III 예 산





- 소요 예산 : 82,296천원
- 예산 과목 : 청소행정과, 청소관리,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, 종량제 봉투 지원, 일반보상금, 사회보장적수혜금


붙임 구룡마을 무허가지역 쓰레기 수거대책

**[붙임] 구룡마을 무허가지역 쓰레기 수거대책**

구룡마을 무허가지역 쓰레기 수거대책

1995. 6

| 과   | 장 | 서무계장  | 청소과장  | 시민국장 | 부구청장 | 구청장   |
|---|---|---|---|------|------|---|
|  |   |  |  |      |      | <br>6/10 |

작업계장 

청 소 과

## 구룡마을 무허가 지역 쓰레기 수거 대책

우리구 관내 구룡마을 무허가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던 구청에서 무료로 직접수거 하였으나 95.6.1부터 구직영 지역 청소업무가 민간대행업체로 100%로 이관됨에 따라 구룡마을 무허가 지역 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1. 기본방향

- 민간 청소대행업체에서 지역쓰레기 수거 전담
- 특수지역 거주자에 대한 쓰레기 수수료 감면

### 2. 근거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(제27조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폐기물 관리 시행규칙 (제6조)

### 3. 세부계획

- 시행일자 : '95. 6. 1 부터
- 대 상 : 구룡마을 무허가 지역 쓰레기 수거
- 주민 수 : 약 9,000 명 (개포1동 8,000명 , 개포2동 1,000명)
- 수거업체 : 평원기업 (주)
- 수거방법
  - 주민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며 수거 수수료는 감면
  -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수행하고 수거수수료는 구예산에서 산출근거에 의거 일정액을 매월 지급

| 구분            | 제 1 안   | 제 2 안  |
|---------------|---|--|
| 산출주체          | 구   | 대행업체   |
| 업종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룡마을 무허가 지역 거주자는 약 9,000명으로 추정</li> <li>※ 청소 67500-1826(94.12.27)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소대행업체 (평원기업)에서는 2,187세대에 약 9,000명으로 추정</li> </ul>  |
| 수거필요인원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사 1명, 미화원 3명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사 1명, 미화원 3명</li> </ul>  |
| 일일배출량<br>일배출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일 배출량 : 약 6톤</li> <li>일배출량 : <math>6\text{톤} \times 30\text{일} = 180\text{톤}</math>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일 배출량 : 약 7톤</li> <li>일배출량 : <math>7\text{톤} \times 30\text{일} = 210\text{톤}</math><br/>(1,260 m<sup>3</sup>)</li> </ul>   |
| 소요예산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math>5,760,000\text{원} \times 7\text{월} = 40,320,000\text{원}</math></li> <li>※ 산출내역</li> <li>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27조(수수료 감면)에 의거 1인당 매월 50ℓ 지급<br/>(50ℓ = 640원)</li> <li><math>9,000\text{명} \times 640\text{원} = 5,760,000\text{원}</math>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math>6,426,000\text{원} \times 7\text{월} = 44,982,000\text{원}</math></li> <li>※ 산출내역</li> <li>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 (㎡ = 5,100원)</li> <li><math>1,260\text{㎡} \times 5,100\text{원} = 6,426,000\text{원}</math></li> </ul> |

#### 4. 문제점

- 실 거주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감면대상 조사 및 배출량 산출이 곤란
- 감면대상자로 지정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받지 않고 구룡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주사실 인정등 행정상 또다른 권리를 주장할 우려가 있음.

#### 5. 대책

- 구룡마을 무허가 지역 쓰레기 수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며 대행업체인 평원기업이 수거토록 하여 감면조치하고 수거 수수료는 제 / 안을 확정하여 매월말 대행업체의 청구에 의거 구예산에서 지원

## 구룡마을 무허가지역 쓰레기 수거 및 수집·운반비 지급

### 배 경

- 구룡마을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여도 구청에서 무료로 직접 수거하여 왔으나, '95. 6. 1 부터 구직영 지역 청소업무가 민간대행 업체로 100% 이관됨에 따라 동 지역을 전담수거하는 평원기업에서 쓰레기 수거기로 결정

### 근 거

- 서울특별시강남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
  - 제27조제3호(현재 제31조제3호)
  -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
    - 3.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지역
  -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용 봉투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,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- 서울특별시강남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
  -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- 3. 개포동 567번지 2호(구룡산 무허가) 지역

### 방침결정

- '95. 6. 1 부터 구룡마을 무허가지역에 쓰레기 수거 및 수집·운반수수료 지급결정('95. 6.10 구청장 방침)
- 구룡마을 지역 현황 및 쓰레기 배출량
  - 인 구 수 : 약 9,000명으로 추정
  - 1일 평균 배출량 : 약 6톤(월 180톤 - 6톤 × 30일)

- 소요예산 : 5,760,000원
- 산출근거 : 9,000명 × 640원(50ℓ 가정용 규격봉투의 수집·운반비)
- ※ '95년도 당시에는 모든 감면대상자에게 50ℓ 씩 지급
- ※ 청소 67500-1826( '94.12.27)호에 의거 구룡마을 인구현황 조사

**증액지급 사유**

- 96. 1월 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50ℓ 씩 지급하던 규격봉투를 60ℓ 로 증액 지급키로 결정('96. 2.13 구청장 방침 제 327호)
- 월 지급액 : 6,858,000원
- 산출근거 : 9,000명 × 254원(20ℓ 봉투가격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) × 3매

**배출량과 인구수에 의한 지급액 비교**

- 배출량에 의한 수집·운반수수료 산출시
  - 월 180Ton 배출시
  - 부피단위인 ℓ 를 무게단위인 kg으로 환산시 100ℓ 의 종량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시 약 25kg이 됨('95년도 종량제 시행지침상 규정임)
  - 1Ton은 1,000kg으로 100ℓ 종량제 규격봉투가 40매 필요
  - 180Ton/월 × 40매 = 7,200매(100ℓ 규격봉투 적용시)
  - 180Ton/월 × 80매 = 14,400매( 50ℓ 규격봉투 적용시)
  - 14,400매 × 640원 = 9,216,000원(50ℓ 규격봉투 수집·운반비 적용)
- 인구수에 의한 수집·운반수수료 산출시
  - 9,000명 × 640원(50ℓ 1매) = 5,760,000원